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93
----------	------

발의년월일 : 2012. 5.
발 의 자 : 천명숙, 홍진옥 의원

1. 제정취지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용어와 보육정책 위원회의 기능,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 기회보장을 위해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5조)
-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2조 제2항)
-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 삭제(안 제16조)
- 용어의 명칭 변경
(안 제4조, 제5조, 제3장의 제목, 제10조 ~ 제15조, 제17조~제21조)
 - “보육시설” ⇒ “어린이집”, “보육시설종사자” ⇒ “보육교직원”
 -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입법예고 : (2012. 4. 7 ~ 4. 27) 결과 의견접수 사항 없음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 및” 을 “어린이집의 원장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 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육시설” 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을 “어린이집의 원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 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을 “시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설치 및 운영)” 을 “(설치와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시설 “을 ” 어린이집 “으로, ” 시립보육시설 “을 ” 시립어린이집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립보육시설” 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장애아어린이집, 야간어린이집 등의 특수어린이집이 필요하면 시립어린이집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시립보육시설” 을 “시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시설장” 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 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립보육시설” 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시설” 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자를 다시 선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의”를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하여 시설을”을 “어린이집 시설”로, “손괴한 경우”를 “파손하였을 때”로, “불가능한 경우”를 “불가능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설 및”을 “어린이집 시설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종사자의 임면 및 전보)”를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전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시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보육시설을”을 “다만,”으로, “경우 보육시설장은 당해”를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장은 종사자”를 “원장은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립보육시설”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종사자의 복무)”를 “(보육교직원의 복무)”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을 “수탁자와 원장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4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4호 중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위탁기간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시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생 략) 2. <u>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u> 3.~4.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어린이집의 원장과</u> ----- 3.~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u>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u> 3. <u>보육시설</u>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u>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u> 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 등의 <u>보육시설 설치기준</u> 및 <u>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u> 에 관한 사항 6.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u>시립어린이집</u> ----- -- 3. <u>어린이집</u> ----- ----- 4. <u>어린이집의 원장과</u> ----- ----- 5. ----- <u>어린이집</u> ----- <u>보육교직원</u> ----- 6. (현행과 같음)
제3장 <u>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u>	제3장 <u>시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u>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보육 수요와 <u>시설공급</u>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u>시립보육시설</u>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u>시립보육시설</u>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u>시립보육시설</u>에 <u>장애인보육시설</u>, <u>야간보육시설</u> 등 특수 보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10조(설치와 운영) ① -----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 ----- ----- <u>시립어린이집</u>-----.</p> <p>② 시장은 장애아어린이집, 야간어린이집 등의 특수어린이집이 필요하면 <u>시립어린이집</u>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1조(위탁운영) ① <u>시립보육시설</u>은 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u>보육시설</u>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u>보육시설</u>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③ <u>시립보육시설</u>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p>	<p>제11조(위탁운영) ① <u>시립어린이집</u>----- ----- ----- -----어린이집의 원장----- -----.</p> <p>② ----- ----- -----어린이집-----.</p> <p>③ <u>시립어린이집</u>----- ----- -----.</p>
<p>제1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u>시설</u>의</p>	<p>제12조(위탁계약) ① ----- ----- -----어린이집-----</p>

현 행	개 정 안
<p>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u>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 -----. <후단삭제></p>
<p>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실적을 평가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p>	<p>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자를 다시 선정한다.</p>
<p>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u>보육시설</u>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u>어린이집</u>----- ----- -----.</p>
<p>② ~ ③ (생 략)</p> <p>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고 <u>시설</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어린이집</u> ----- -----.</p>
<p>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u>인하여</u> <u>시설</u>을 멸실 또는 <u>손괴한</u>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u>불가능한</u>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p>	<p>⑤ -----<u>어린이집</u> ----- <u>시설</u> -----<u>파손하였을 때</u>----- -----<u>불가능할 때</u>-----.</p>
<p>⑥ 수탁자는 <u>시설</u>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u>소요되는</u>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⑥ ----- <u>어린이집</u> <u>시설</u>과 ----- -----<u>필요한</u> -----.</p>

현 행	개 정 안
<p><u>제15조(종사자의 임면 및 전보)</u> ① <u>시립 보육시설</u>의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u>보육시설</u>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시설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p> <p>② <u>시설장은 종사자의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시장은 <u>시립보육시설</u>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자 및 <u>시설장의 제청</u>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p>	<p><u>제15조(보육교직원의 임면과 전보)</u> ① <u>시립 어린이집의 원장</u>-----. 다만, ----- ----- <u>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u> -----</p> <p>② <u>원장은 보육교직원</u>----- -----.</p> <p>③ -- <u>시립어린이집의 원장의 보육교직원을</u> -----.</p>
<p><u>제16조(종사자의 정년)</u>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년 규정을 준용하되 시설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규정에 따른다.</p>	<p><u><삭제></u></p>
<p><u>제17조(종사자의 복무)</u>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총주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p>	<p><u>제17조(보육교직원의 복무)</u> <u>보육교직원</u>----- ----- -----.</p>
<p><u>제18조(지도 감독)</u> ① 시장은 <u>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u> 운영 실태를 연 2회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제18조(지도 감독)</u> ① ----- <u>수탁자와 원장의 어린이집</u> ----- ----- -----.</p> <p>②(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육시설</u>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 3. (생 략) 4. 시장이 <u>보육시설</u>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p>제19조(비용의 보조) ----- ----- ----- -----. 1. <u>어린이집</u> ----- 2. ~ 3. (현행과 같음) 4. ----- <u>어린이집</u> ----- -----</p>
<p>제20조(지도 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u>시설</u>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u>시설</u>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p>	<p>제20조(지도 감독) ① ----- <u>어린이집</u> ----- -----. ② ----- <u>어린이집</u> ----- -----.</p>
<p>제21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u>시설</u>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생 략) 	<p>제21조(보조금의 환수)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어린이집</u> ----- ----- 5.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 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법 제2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 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 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